

거 주(F-2)

<p>활동범위 및 해당자</p> <p>▶ 목차</p>	<p>■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p>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삭제></p>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p> <p>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p>	<p>■ 5년</p>

**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③ 초청장(붙임1 양식), 혼인배경 진술서(붙임2 양식)
-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호증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 국내입국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는 사증발급 억제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첨부서류

▣ 목차

	<p>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p> <p>※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조정의 진정성, 조정자 및 피조정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p>
<p>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p>	<p>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p> <p>※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p>(‘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p> <p>첨부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p> <p>※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조정의 진정성, 조정자 및 피조정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p>
<p>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p> <p>▶ 목차</p>	<p>1. 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p> <p>■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 종사자 :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p>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p>*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 받고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즉, F-2-71은 대상 아님)</p> <p>**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사실혼 불인정)</p> <p>*** 주체류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p> <p>※초청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단수, 90일),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충족시 F-2-71(단수, 90일),</p>
	<p>신청 방법(사증발급인정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법인·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 신청 (F-2-7, 단수, 90일)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초청자(F-2-7 체류자격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 신청(F-2-71, 단수, 90일) <p>※주체류자의 소득기준(GNI이상) 미충족(다른허가요건 충족)시 F-1-12(단수, 90)</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장 법인·유망산업분야 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③ 신청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 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 ④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⑤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 ⑥ 체류지 입증서류
-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 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 ④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⑦ 체류지 입증서류
- ⑧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점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

동반(F-3)

활동범위 및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결핵진단서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전자사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ccc;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p> </div>
	<h3>1. 발급대상</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의 동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첨단분야 최우수인재(E-7-ST)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h3>2. 제출서류</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h3>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h3>

<p>사증</p> <p>▶ 목차</p> <p>공관장 제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p>	<p>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p>첨부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p> <p>※ 서류제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미성년 자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p>※ 본국의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p>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E-1, E-3, E-4, E-5, F-4, H-2의 경우 제출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p>※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p> <p>④ 신원보증서</p> <p>⑤ 체류지 등 주거지 입증서류 (E-1, E-3, E-4, E-5, F-4, H-2의 경우 제출 면제)</p> <p>※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p>
	<p>2.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동반(F-3-19, 01년) 복수사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3-19, 01년)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동반(F-3-20, 090일) 복수사증

-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3-20, 0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90일간 유효한 단수사증(F-3-18)

☞ 구체적인 내용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름('22.03.28.)

- 대상

- 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 받고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즉, F-2-71은 대상 아님)

**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사실혼 불인정)

*** 주체류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p>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④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p>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p> <p>■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p> <p>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p>※ 서류제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미성년 자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p>※ 본국의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목차	

-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E-1, E-3, E-4, E-5, F-4, H-2의 경우 제출 면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④ 신원보증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E-1, E-3, E-4, E-5, F-4, H-2의 경우 제출 면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